

장애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

교 류 협 약 서

대구대학교와 De.Plan(디플랜)(이하 “협약기관”이라 한다)은 상호 협력 및 유대 강화를 통해 양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장애 대학생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고용 연계를 통해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내용)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협력하며,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.

- 가. 장애 대학생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을 위한 협력
- 나. 구직 장애 대학생 발굴 및 일자리 정보공유에 대한 사항
- 다. 장애 대학생 맞춤형 직무교육 정보공유 및 제공을 위한 협력
- 라. 양 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
- 마. 기타 상호 발전에 필요한 협의 사항

제3조(신의성실)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취지를 이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하며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.

제4조(개인정보 보호) 협약기관은 상호 협약기관에서 제공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제삼자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5조(기간)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 해지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6조(법적 구속력 배제) 제4조를 제외한 본 협약서상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.

제7조(홍보) 협약기관은 협약사항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·배포하는 경우 상대방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, 보도자료에는 협약기관이 상호 협력하였다는 문구를 명기한다.

제8조(기타사항) 협약기관의 명칭, 대표자 변경 등 주요 변동상황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에 따른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,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분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·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0월 30일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

디플렌

장애학생지원센터장 이 동 석

대표 최 필 호

이 동 석

최 필 호